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관찰·관광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부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. 또한, ‘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’을 ‘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‘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’ 명칭을 ‘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’으로 변경하고, 「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갯벌복원사업과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등과 같이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 우려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(별표2)

- 1)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

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

나.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사업 추가(안 제25조 제3항 제4호, 제5호)

- 1) 「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갯벌복원사업과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사업에 추가함

다.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 규정(안 제25조부터 35조 및 별지1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)”을 “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”으로 한다.

4. 「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에 따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

5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해양생태

계 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제26조의 제목 “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·징수)”를 “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·징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각각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“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)”을 “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생

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”를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”로,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고지”를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”로,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”을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”로, “당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“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각각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)”을 “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”를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”로,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”를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”로,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”을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”로, “환급하여야”를 “환급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”으로, “신청하여야”를 “신청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”으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29조의 제목 “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용도)”를 “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)”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)”을 “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2항 중 “신청을 하여야”를 “신청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”으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”을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”으로,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”를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”로 한다.

제30조의2의 제목 “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)”를 “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)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”을 각각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역계수 (제26조제2항 관련)”을 “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 (제26조제2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 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5호	200만원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

별표 2 제11호(중전의 제10호) 해당 법 조문란 중 “법 제65조제2항제5호”를 “법 제65조제2항제6호”로 한다.

부 칙 (2023. 00. 00)

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) ① · ② (생략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5조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5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6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----- <u>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<u><신설></u> 4. (생략) ④ (생략) ⑤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<u>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</u> 을 산정·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	

면적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26조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·징수)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분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7조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-----

--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----- 해양생태계보전부

담금-----

-----.

④----- 해양생태계
보전부담금-----

----- 통지해야 -----.

제27조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

재산정) ①제26조제4항에 따라
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
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
전협력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
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
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
0일 이내에 당해 해양생태계보
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
 있다.

1.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
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
못된 경우

2.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
정이 잘못된 경우

② (생 략)

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
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
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
 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
 다.

제28조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
정산)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
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
 사업의 준공검사·신고 등(이하
 “준공검사등”이라 한다)을 받은

재산정) ①-----
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
고지를 받은 자-- 해양생태계
보전부담금 납부고지 -----

 --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
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-----
 ----- 해당 해양생태계보
전부담금-----
 ---.

1.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
2.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 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

 ----- 통지해야 ----
 --.

제28조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
정산) ①----- 해양
생태계보전부담금의 -----

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9조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용도) (생략)

제30조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) ①법 제49조제8항에서 “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”이란 다음 각

--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-----
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-
----- 환급해야
-----.

②--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
-- 신청해야 -----.

③-----
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-----

----- 통지해야
-----.

제29조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) ① -----

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 다만,
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
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
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
제외한다.

1. 2. (생략)

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
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
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
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
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④ (생략)

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
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
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
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
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
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
을 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⑦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
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
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당 사업
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

-----.

----- 해양생
태계보전부담금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 신청해야 -----.

③ ④ (현행과 같음)

⑤-----

-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--

-- 해야 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-----

----- 해양
생태계보전부담금은 -----

--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

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.

⑧ (생 략)

제30조의2(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) (생 략)

제35조(권한의 위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~ 9. (생 략)

10.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·징수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.

가.·나. (생 략)

11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·허가등의 통보의 수령(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)

12.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

금의 -----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2(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 해
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--. -----

-----.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 해
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
12. ----- 해

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
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(제1
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
따른 권한은 제외한다)

13.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
계보전협력금의 독촉, 가산금
의 부과 및 강제징수(제10호
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
권한은 제외한다)

14. (생 략)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
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
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
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10. (생 략)

11.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
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·
징수(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
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
당한다)

12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
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
상이 되는 사업 인·허가등의
통보의 수령(제1항제10호 각
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
한만 해당한다)

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
13. ----- 해양생태
계보전부담금-----

1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 해
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
12. ----- 해
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
13.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(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)

14.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독촉,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(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)

[별표 1]

13. --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
14. -----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-----

[별표 1]

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역계수(제26조제2항 관련)

적용 지역	지역계수	
	공유수면 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	공유수면 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
1.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 및 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른 어항	2	2
2.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 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항에 따른 배타 적 경제수역	3	6
3. 해양보호구역, 「습지보 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구역, 「해양환경관리 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「자연공원법」 제2 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 원	20	40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	6	12

비고: 제1호와 제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
에 따른 지역계수를 적용한다.

[별표 2]

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(제26조제2항 관련)

적용 지역	지역계수	
	공유수면 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	공유수면 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
1.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 및 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른 어항	2	2
2.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 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항에 따른 배타 적 경제수역	3	6
3. 해양보호구역, 「습지보 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구역, 「해양환경관리 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「자연공원법」 제2 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 원	20	40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	6	12

비고: 제1호와 제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
에 따른 지역계수를 적용한다.

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6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 법 조문	과태료의 금 액
1.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·조사·관찰 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·제거 행위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제1호	150만원
2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·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제2호	200만원
3.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·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제3호	100만원
4.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1호	50만원
5.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제4호	100만원
6.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2호	50만원
7. 법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3호	50만원
8.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4호	50만원
9. 법 제36조제5항(법 제27조 및 제30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)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	법 제65조제1항	500만원
10.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, 출입·취사·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	<u>법 제65조제2항제5호</u>	100만원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6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 법 조문	과태료의 금 액
1.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·조사·관찰 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·제거 행위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제1호	150만원
2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·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제2호	200만원
3.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·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제3호	100만원
4.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1호	50만원
5.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제4호	100만원
6.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2호	50만원
7.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<u>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</u>	<u>법 제65조제2항제5호</u>	<u>200만원</u>
8. 법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3호	50만원
9.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	법 제65조제3항제4호	50만원
10. 법 제36조제5항(법 제27조 및 제30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)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	법 제65조제1항	500만원
11.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, 출입·취사·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	<u>법 제65조제2항제6호</u>	100만원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315